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 알림

1. 관련 :

- 가. 운영지원과-2888(2014. 1.23.)
- 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36(2015. 1. 7.)
- 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176(2017. 1.20.)

2.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 및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 적용하여 여비 현실화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제1호	가호	실비	실비	
	나호	실비	실비	
	다호	실비(상한액 150천원)	실비	현실화
	라호	실비(상한액 100천원)	실비	현실화
제2호	-	70,000원	서울특별시	
	50,000원	60,000원	광역시	
	40,000원	50,000원	기타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필요시 자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단가 예외기준

○ 적립 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활성화 및 개인효용 극대화(3만마일 미만을 경우 10원으로 조정)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신설

○ 공적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

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신설

○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시 공적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의 등가교환제도 마련

붙임 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여비제도 발취)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전문대학, 국립초중고등학교, 소속기관

주무관 **하만석** 행정사무관 **이정섭** 운영지원과장 02/20 **김용호**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4361 (2017.02.21.) 접수 재무과-1983 (2017.02.21.)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 / www.moe.go.kr

전화 044-203-6127 / 전송 044-203-6154 / manseok419@moe.go.kr / 공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